

[별표 8]

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(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

1. 시설기준

가.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

1) 경계 울타리

기화장치의 주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

(2) 밸브등의 보호

저장탱크나 이에 부착된 배관의 밸브등을 조작할 때에는 밸브의 재질·구조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과대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3) 1)과 2)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2)·3)·4)가)·4)다)부터 카)까지·5)부터 7)까지·8)가)①·8)나)·8)다)·10)·(배관매설깊이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)·12)·16)가)·16)다)부터 16)마)까지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. 이 경우 별표 5 제1호다목2)라)① 중 “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지역”은 “액화석유가스 저장소”로 본다.

나.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

1) 구분설치

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구분하여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되,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

2) 용기집합시설 설치금지

저장설비는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

3) 1)과 2)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2)·3)·11)·12)·16)다)·16)라)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, 별표 5 제1호자목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6 제1호가목·라목·마목·바목·아목·자목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

다.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(다만, 30 L 이하의 용접용기만을 말한다)

1) 안전거리

용기보관실 외의 용기저장소(이하 “실외저장소”라 한다)에서 용기를 집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

2) 경계 울타리

실외저장소 주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, 경계 울타리와 용기보관장

소 사이에는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

3) 구분보관

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의 보관장소는 1.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할 것

4) 소화설비

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추 것

5) 용기보관장소의 바닥

가) 지표면 아래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

나) 바닥으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도랑이나 배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재료로 이중으로 덮을 것

다) 움푹 패인 곳은 적절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메워 평평하게 할 것

6) 용기군(容器群) 사이의 통로

가)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나) 팔렛(pallet)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2.5m 이상일 것

다) 팔렛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1.5m 이상일 것

7) 집적된 용기의 높이

가) 팔렛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

나) 팔렛에 넣지 아니한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

8) 1)부터 7)까지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2)·3)·12)나)·16)다)·16)라)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5 제1호자목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

2. 기술기준

가.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

1) 저장탱크의 온도 유지

저장탱크는 항상 40℃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

2) 저장설비에의 출입

저장설비에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

3) 1)과 2)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·라목1)·라목3)·사목 및 아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

나.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

별표 6 제2호가목과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

다.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

- 1) 용기보관장소의 경계 안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
- 2)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
- 3) 충전용기는 항상 40℃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, 눈·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